

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23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03. 7.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사하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고 여성발전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사하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명칭 변경(안 제5조제6항)
- 사하구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에서 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을 변경함 (안 제10조제1항제2호)

3. 관계법령

-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중 “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중 “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설치및구성)①~⑤(생략) ⑥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<u>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</u>가 간사가 된다.</p> <p>제10조(회계공무원)①(생략) 1. (생략) 2. 기금출납원 : <u>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</u> ②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회의설치및구성)①~⑤(현행과같음) ⑥----- ----- -----<u>여성청소년</u> <u>업무담당주사</u>-----.</p> <p>제10조(회계공무원)①(현행과같음) 1. (현행과같음) 2. ----- : <u>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</u> ②(현행과같음)</p>